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3-148 |
|----------|--------|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민선8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국 조정(안 제4조~14조)

- 행정지원국
  - 교육정책과 : 복지동행국 → 행정지원국 (소관 국 변경)
- 복지동행국
  - 주민생활복지과 → 복지정책과 (명칭변경)
  - 생활보장과, 장애인동행과 → 장애인사회보장과 (부서통합)
  - 아동청소년과 → 아동보육과 (명칭변경)
- 관광경제국
  - 일자리청년과 → 고용협력과 (명칭변경)
- 재정관리국
  - 디지털재정과 → 예산정책과, 스마트정책과 (부서분리 및 명칭변경)
- 도시환경국
  - 자원순환과 →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부서분리 및 명칭변경)
- 교통건설국
  - 부동산정보과 : 재정관리국 → 교통건설국 (소관 국 변경)
- 사업소 : 폐지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11. 2. ~ 11. 7. (의견제출 있음)

☞ 교육정책과 주요의견

- 서울시교육청의 2022.12.31.자 혁신교육지구 2단계 사업종료 통보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사업이 전환되었음. 이에 따라 관련 조례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 추진 중 임.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 의견제출을 반영한 수정사항

부서 조례 개정에 따라 분장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

| 원 안   | 상 정 안   |
|---|---|
| 제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br>국에 <u>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u><br><u>·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u><br><u>민원여권과</u> 를 둔다. | 제4조(행정지원국) ① -----<br>--- <u>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u><br><u>·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u><br><u>교육정책과·민원여권과</u> -----<br>-----. |

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 청소년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 청소년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3. 11. 8.)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민원여권과**”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교육정책과·민원여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생활보장과·어르신동행과·장애인동행과·가족행복지원과·아동청소년과·교육정책과**”를 “**복지정책과·장애인사회보장과·어르신동행과·가족행복지원과·아동보육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구호,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지역복지육구조사**”를 “**재해구호,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지역보호체계, 지역복지육구조사, 지역자원 관리**”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지역보호체계, 통합사례관리**”를 “**통합사례관리, 보훈시책, 보훈대상자·단체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주거복지**”를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를 “**관리, 주거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장애인복지”를 “아동복지·영유아보육”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6호) 중 “아동복지”를 “양성평등정책, 다문화가족·1인가구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예술과·일자리청년과·체육진흥과”를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예술과·고용협력과·체육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일자리 지원, 일자리 사업”을 “고용정책, 고용사업”으로, “활성화”를 “상생기반”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디지털재정과·재무과·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부동산정보과”를 “예산정책과·스마트정책과·재무과·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을 “통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스마트 정책 추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주택상생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를 “주택상생과·깨끗한마포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

과”를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부동산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적업무 총괄, 지적공부 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 지가조사, 부동산거래 관리, 부동산중개업,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사업소”를 “동”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동”을 삭제한다.

제5장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제18조 앞에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8조) 제8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인사팀장”을 “인사혁신팀장”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구분청·보건소·사업소의 담당관·국·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지원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동행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양성평등정책팀장”을 “가족정책팀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 중 “복

지동행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제12조제4항 중 “청년청소년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마음건강팀장”을 “정신건강팀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깨끗한마포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1호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깨끗한마포과장”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깨끗한마포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표1의 자연재난분야 11의 “자원순환과”를 “깨끗한마포과”로 한다.

나. 별표2의 “자원순환과”를 “깨끗한마포과”로 한다.

다. 별표4의 “자원순환과”를 “깨끗한마포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보건소장, 본청·보건소의 <u>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동장</u>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u>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동장</u>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u>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민원여권과</u>를 둔다.</p> <p>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lt;신 설&gt;</u></p> <p>제5조(복지동행국) ① 복지동행국에 <u>주민생활복지과·생활보장과</u></p> | <p>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br/>-----<br/>----- <u>담당관·과장</u>-----<br/>-----.</p> <p>② ----- <u>담당관·과장</u>-----<br/>-----<br/>-.</p> <p>제4조(행정지원국) ① -----<br/>- <u>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교육정책과·민원여권과</u>-----<br/>-----.</p> <p>② -----<br/>-----.</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p> <p>제5조(복지동행국) ① -----<br/>- <u>복지정책과·장애인사회보장과</u></p> |

· 어르신동행과 · 장애인동행과 · 가족행복지원과 · 아동청소년과 · 교육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동행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 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지역복지욕구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지역보호체계,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책 추진 및 노인 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다문화가족·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르신동행과 · 가족행복지원과 · 아동보육과-----

② -----

1. ----- 재해구호,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지역보호체계, 지역복지욕구조사, 지역자원 관리----- 통합사례관리, 보훈시책, 보훈대상자·단체 지원-----

2. ----- 차상위계층 -----  
--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

3. ----- 관리, 주거복지--

5. 아동복지·영유아보육 -----  
시설 ---

<삭 제>

4. 양성평등정책, 다문화가족·1인가구 지원---

7.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예술과·일자리청년과·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일자리 지원,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7조(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에 디지털재정과·재무과·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재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편성·배정·교부,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 지방공기업,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신 설>

<삭 제>

<삭 제>

제6조(관광경제국) ① -----  
-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예술과·고용협력과·체육진흥과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고용정책, 고용사업-----  
----- 상생기반-----  
---

5.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관리국) ① -----  
- 예산정책과·스마트정책과·재무과·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

② -----  
-----.

1. -----  
-----  
- 통계-----  
-----

2. 스마트 정책 추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에

2. 3. (생략)

4. 지적업무 총괄, 지적공부 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 지가조사, 부동산거래 관리, 부동산중개업,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상생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5. 6. (생략)

제9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관한 사항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삭제>

제8조(도시환경국) ① -----  
- 주택상생과·깨끗한마포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9조(교통건설국) ① -----  
-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부동산정보과-----  
-----.

②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마포중앙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에 둔다.

제14조(관장) 마포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동

제15조 ~ 제17조 (생략)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

<신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⑦ (생략)

⑧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

1. ~ 5. (현행과 같음)

6. 지적업무 총괄, 지적공부 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 지가조사, 부동산거래 관리, 부동산중개업,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삭제>

<삭제>

<삭제>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⑨ (생략)

----- 행정지원과장----- 인사혁신팀장-----.

⑨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윤지현 |
| 연 락 처  | 02-3153-8213    |